#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42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정춘생·김준형·차규근

황운하 · 신장식 · 김재원

김선민·조 국·박은정

이해민 · 서왕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고령,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지 또는 이웃 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청년들은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음.

아동·청소년·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자립과 삶의 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 또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실정임.

이에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돌봄서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 원, 취업·자립 지원 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의 한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돌봄대상자"란 고령·장애·질병·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족, 이웃사람 또는 지인을 말하고, "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란 돌봄대상자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음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함(안 제3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 아

- 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 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게 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 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돌봄 아동 ·청소년·청년 지원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맞 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

#### 법률 제 호

## 돌봄 아동 · 청소년 ·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 이념) ① 모든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 및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③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돌봄 아동 ·청소년·청년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④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권리보 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돌봄대상자"란 고령·장애·질병·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

- 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웃사람 또는 지 인을 말한다.
- 2.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란 돌봄대상자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돌봄 아동·청 소년·청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 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별로 전담 부서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제6조(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하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조기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 3.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4.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
  - 5.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 6.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7.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 8. 그 밖에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기 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9조에 따른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돌봄 아 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현황 및 실태 파악과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위원회) ①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4.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

한 사항

- 5.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 2. 위촉직 위원: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단체의 장이나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 이 위촉하는 사람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돌봄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에 대하여 돌봄대상자의 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돌봄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 년·청년이 돌봄대상자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

- 의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종류, 지원 대상·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 년이 생계와 돌봄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 ·청소년·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직업 적성검사 및 진로 상담프로그램
  - 2.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 3. 직업 소개 및 관리
  - 4. 그 밖에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직업 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건강관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 ·청년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 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자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 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주거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 년과 돌봄대상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부여, 임대보증금 지원, 주거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의 종류, 지원 대상·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 ·청년과 돌봄대상자가 공공의 아동·청소년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선터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 2.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조기 발굴 및 지역사회 지원의 연계
  - 3.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4.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 보
  - 5.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자조모임 지원
  - 6.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 7. 그 밖에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관련 비영리법 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종사자의 자격,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19조(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복지 전담공무원) ①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 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전담공무원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등 지역 단위에서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담공무원 1인이 현실적으로 담당 가능한돌봄아동·청소년·청년 가구 수를 고려하여 적정 수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 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⑥ 관계 행정기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복지단체(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5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 사하는 공무원의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 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1조(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및 시·군·구에 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례관리 위탁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지원 신청의 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제10조에 따른 돌봄수당의 지급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전담공무원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5. 그 밖에 이웃사람, 지인 또는 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의 생활환경 및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비밀유지 의무)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 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

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 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과태료) ① 제25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 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